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조달관리사 등 2개 종목을 신설하고, 포장산업기사 등 2개의 종목을 폐지하며,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가스기사 등 29개 종목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며,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행정정보 변경(안 제10조의 3 제2항, 제41조 제4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1)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서 및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제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함.

나.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안 제28조제6항, 제28조의 2 및 별지 제13호의 6 서식 신설)

1) 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교육·훈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선정을 위한

절차, 추가 직무역량을 기재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을 규정함.

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 4, 5, 별지 제14호, 별지 제15호 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모바일형을 추가하여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및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안 별표 11의 4)

1) 수험자의 검정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인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마.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안 별표6)

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중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 필수능력단위가 일치하는 7개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

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의4, 별표 17 등)

구분	자격 명칭(중분류 번호)	시행일
신설	공공조달관리사(011)	2026. 1. 1.
	봉제기능사(192)	2026. 1. 1.
폐지	포장산업기사(024)	2027. 1. 1.
	석공예기능사(232)	2027. 1. 1.

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 1) 농기계정비기능사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임업종묘기사를 산림종묘기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함.
- 2)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능사,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산림종묘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종자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식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의 시험과목 범위나 과목명에 사용되는 용어를 변경함.
- 3)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같음할 수 있는 종목에 바이오공정기능사를 추가함.
- 4)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종목에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 서식 및 제13호의5 서식에 기재된 자격취득내역에 필요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격번호, 자격종목, 합격연월일, 발급연월일, 주무부처(청), 발급기관(수탁기관)명, 발급기관(수탁기관)장 직인,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표출방식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⑥ 영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직무역량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추가 직무역량 표시의 필요성
2. 추가 직무역량과 기존 자격 종목간의 연관성
3. 훈련 과정 및 평가 방법의 신뢰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 직무역량 표시를 요청받으면 해당 종목의 주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에 추가 직무역량 표시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 또는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확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술자격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 지정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제목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06)					서비스 분야(35)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30	116	116	160	10	10	3	12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01 사업관리(1/0)”를 “01 사업관리(1/1)”로 한다.

별표2 중 “011 사업관리(-)”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011 사업관리 (1)									공공조달 관리사
--------------------	--	--	--	--	--	--	--	--	-------------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2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2 기계 장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레도장비 정비	레도장비 정비	레도장비 정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공조냉동 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 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표면실장 장비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업기계 정비				
				자동차설비	자동차설비				
					반도체설비 보전				

별표2의 직무분야(26)란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유·의복(2/18)”로 한다.

별표2 중 “192의복(9)”란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2 의복(9)				신발					
					남성복				
					여성복				
					신발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봉제				

별표 2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04)					서비스 분야(35)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1급	2급	3급	단일등급
		84	30	116	115	159	10	10	3	12

별표2의 직무분야(26)란 중 “02 경영·회계·사무(4/26)”을 “02 경영·회계·사무(4/25)”로 한다.

별표2 중 “024 생산관리(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4 생산 관리(6)	공장 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 경영	품질경영					
	품질 관리								

별표2의 직무분야(26)란 중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9)”를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8)”로 한다.

별표2 중 “232 목재·가구·공예(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2 목재· 가구· 공예 (13)				가구제작	가구제작				
		귀금속 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석공예				

별표 2 중 “243 임업(1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3 임업 (14)				버섯					
					버섯 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종묘		임업종묘				
					목재가공				

별표6의 「종묘관리법」 다음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냉동공조설치Ⅱ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떡제조Ⅱ2		떡제조기능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Ⅱ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시각디자인Ⅱ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과Ⅱ2		제과기능사
산업용크레인조종Ⅱ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용크레인조종Ⅱ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비고 : 단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취득자에 대한
적용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자격 취득자로서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전체에
대하여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
정규정 중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위에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	공공조달관리사
-------------------	---------

같은 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진흥청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업기계, 농업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종자, 시설원예, 버섯, 버섯종균, 식물보호, 농화학, 농작업안전보건
-----------------------	---

별표7 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의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산림종묘 , 임업종묘, 임산가공, 목공예,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

같은 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략), 품질관리, 포장, 광학, 광학기기, 신발제조, 신발,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석공예 , 전자상거래관리사, 사무자동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임베디드, (생략)
-----------	--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의 “01 사업관리(1/0)”를 “01 사업관리(1/1)”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11 사업관리(-)”를 “011 사업관
리(1)”로 한다.

별표 8의 “011 사업관리(1)[중전의 011 사업관리(-)]” 자격종목란을 다음
과 같이 한다.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	공공조달관리 실무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농기계정비기능사”
를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한다.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19 섬유·의복(2/17)”을 “19 섬
유·의복(2/18)”으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2 의복(
9)”를 “192 의복(10)”으로 한다.

별표 8의 192 의복(10)[중전의 192 의복(9)]의 세탁기능사란 다음에 봉제
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봉제기능사	실기시험	봉제 실무
-------	------	-------

별표 8 중 201 전기(16)의 철도전기신호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전기신호기능사	필기시험	전기 기초, 전기철도시공 유지보수, 점검, 철도신호 제어 시공 유지보수
	실기시험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제어 실무

별표 8 중 221 식품(7)의 식육가공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육가공기사	필기시험	1. 식품안전 2. 식육과학 3. 식품가공학 4. 축산식품 관련 규정, 제품저장 및 유통학
	실기시험	식육가공 실무

별표 8 중 251 안전관리(27)의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건설재료 4. 건설시공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기시험	건설안전 실무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1.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3. 건설재료 및 시공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기시험	건설안전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의 개정규정 중 “02 경영·회계·사무(4/26)”을 “02 경영·회계·사무(4/25)”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의 개정규정 중 “024 생산관리(7)”을 “024 생산관리(6)”으로 한다.

별표 8 중 024 생산관리(6) [중전의 024 생산관리(7)]의 포장산업기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131 조리(12)의 조리기능장, 한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북어조리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리기능장	필기시험	위생 및 안전관리, 식품학, 조리이론 및 급식관리
	실기시험	조리작업

한식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 및 안전관리 2. 식재료관리 3. 한식조리
	실기시험	한식조리 실무

중식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 및 안전관리 2. 식재료관리 3. 중식조리
	실기시험	중식조리 실무

양식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 및 안전관리 2. 식재료관리 3. 양식조리
	실기시험	양식조리 실무

일식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 및 안전관리 2. 식재료관리 3. 일식조리
	실기시험	일식조리 실무

북어조리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 및 안전관리 2. 식재료관리 3. 북어조리
	실기시험	북어조리 실무

별표 8 중 141 건축(31)의 건축기사란, 건축기사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기사	필기시험	1. 건축계획 및 설계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4. 건축설비
	실기시험	건축시공 실무

건축산업기사	필기시험	1. 건축계획 및 설비 2. 건축시공 3. 건축구조
	실기시험	건축시공 실무

별표 8 중 142 토목(48)의 잠수산업기사란, 잠수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잠수산업기사	필기시험	1. 잠수물리 및 해양학 2. 잠수의학 및 생리학 3. 잠수장비 4. 잠수작업
	실기시험	잠수현장 실무

잠수기능사	필기시험	잠수 일반
	실기시험	잠수현장 실무

별표 8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농업기계기사란, 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기사	필기시험	1. 농업 동력 2. 농업 기계 3. 기계요소설계 4. 유압기기 및 기계재료
	실기시험	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산업기사	필기시험	1. 농업기계공학 2. 농업 동력 3. 농업 기계
	실기시험	농업기계 실무

농업기계정비기능사	필기시험	농업기계정비, 농업기계전기, 농업기계 안전관리
	실기시험	농업기계정비 실무

별표 8 중 202 전자(20)의 광학기기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학기기산업기사	필기시험	1. 광학일반 2. 광학기기 3. 광학시스템
	실기시험	광학시스템 실무

별표 8 중 222 제과·제빵(6)의 제과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과산업기사	필기시험	1. 위생안전관리 2. 제과점관리 3. 과자류 제품제조
	실기시험	과자류 제조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9)”를 “23 인쇄·목재·가구·공예(2/18)”로 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의 개정규정 중 “232 목재·가구·공예(14)”를 “232 목재·가구·공예(13)”로 한다.

별표 8 232 목재·가구·공예(13)[중전의 232 목재·가구·공예(14)]의 석공예기능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241 농업(14)의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자기사	필기시험	1. 종자생산 관리 2. 식물육종 3. 재배원론 4. 작물보호 5. 종자 관련 법규
	실기시험	종자관리 실무

유기농업기사	필기시험	1. 재배원론 2. 토양특성 및 관리 3. 유기농업 이해 4.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농업 규정
	실기시험	유기농업 실무

유기농업산업기사	필기시험	1. 재배 2. 토양특성 및 관리 3. 유기농업 이해
	실기시험	유기농업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3 임업(14)의 “임업종묘기사”를 “산림종묘기사”로 한다.

별표 8 중 243 임업(14)의 산림종묘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종묘기사	필기시험	1. 산림종묘생산 2. 산림종묘보호 3. 산림자원육종 4. 토양비료
	실기시험	산림종묘 실무

별표 8 중 직무분야(61)란 중 251 안전관리(27)의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기사	필기시험	1. 가스법령활용 2. 가스사고예방관리 3. 가스설비관리 4. 가스특성활용
	실기시험	가스 실무

가스산업기사	필기시험	1. 가스법령활용 2. 가스설비관리 3. 가스특성활용
	실기시험	가스 실무

화재감식평가기사	필기시험	1. 화재조사 2. 화재감식 3.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4. 화재조사 보고 및 피해평가
	실기시험	화재감식평가 실무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필기시험	1. 화재조사 2. 화재감식 3.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실기시험	화재감식 실무

별표 8 중 262 에너지·기상(13)의 에너지관리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너지관리기사	필기시험	1. 열 및 에너지관리 2. 연소설비 3. 열설비 운영관리 4. 열설비 안전 및 관계법규
	실기시험	열관리 실무

별표 9 제2호 중 직무분야 01 사업관리, 중직무분야 011 사업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종목
01 사업관리	011 사업관리	공공조달관리사
02 경영·회계·사무	021 경영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2급

별표 9 제1호의 181 화공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1 화공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화학분석, 바이오 공정
--------	-----------------------------------	------------------	--------------

별표 9 제1호의 024 생산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24 생산관리	포장, 품질경영	포장, 품질경영
----------	----------	----------

별표 9 제1호의 243 입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3 입업	산림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종묘	산림, 식물보호
--------	----	----------------------	----------

별표 10의 17.재료, 172.판금·제관·새시란 다음에 19.섬유·의복, 192.의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섬유·의복	192.의복	봉제기능사
----------	--------	-------

별표 11의4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생략) 6. 관련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1·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성적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응시자격 기준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성적 제출 시점에 검정시행기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진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단 유효기간이 없어 영구적으로 활용가능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취득과 동시에 기준요건을 충족함)									
	가. 영어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Level 2)	FLEX	PELT (main)	IELTS
	기준점수	700점 이상	18.5 12 점에 실시된 시험	18.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CBT	IBT	65점 이상	625점 이상	345점 이상	7.0점 이상

나. ~ 라. (생략)

별표 11의4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란 다음란인 응시자격 제한 없는 서비스 종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이력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공공조달관리사	제한 없음
-----------------------------------	-------

별표 17의 한글속기란 다음에 공공조달관리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조달관리사	필기(과목당 100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100점)	60점 이상

별표 19의 16.기계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중 “농기계정비기능사”를
“농업기계기사·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로 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의 4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사 진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주무부처(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처(청)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수탁기관장 직인 *모바일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취득내역에 필요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격번호, 자격종목, 합격연월일, 발급연월일, 주무부처(청), 발급기관(수탁기관명, 발급기관(수탁기관장 직인)을 모두 포함한 경우 표출방식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	--

별지 제13호의 5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 자격번호 : • 자격종목 : • 성 명 : • 생년월일 : • 교육·훈련기관 : • 교육·훈련기간 : 사 진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주무부처(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모바일국가기술자격증은 자격취득내역에 필요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격번호, 자격종목, 합격연월일, 발급연월일, 주무부처(청), 발급기관(수탁기관명, 발급기관(수탁기관장 직인,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표출방식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교육·훈련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능력단위코드</th> <th>능력단위명</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 능력단위코드에 대한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http://www.n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비고																											
능력단위코드	능력단위명	비고																														

별지 제13호의 6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쪽)	(2쪽)																																												
 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 역량) 사 진 (3.5cm×4.5cm)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주 무 부 처 (청)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처(청)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수탁기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제활용품)) 비고 : 무궁화 무늬는 금색	다음과 같이 직무역량을 취득하였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훈련 기간(시간)</th> <th>취득 직무역량</th> <th>교육훈련 기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210mm×297mm(일반용지60g/㎡(제활용품)) 비고 : 무궁화 무늬는 금색	교육훈련 기간(시간)	취득 직무역량	교육훈련 기관	비고																																								
교육훈련 기간(시간)	취득 직무역량	교육훈련 기관	비고																																										

별지 제14호의 서식 앞쪽의 자격증 서식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 서식 선택
☐ 별지 제11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1호의2서식(과정평가형 수첩형),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카드형), ☐ 별지 제13호의2서식(상장형), ☐ 별지 제13호의3서식(과정평
 가형 상장형) ☐ **별지 제13호의4서식(모바일형)** ☐ **별지 제13호의5서식(과정평가형, 모바일형)**

별지 제15호의 서식 앞쪽의 자격증 서식 선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 서식 선택
☐ 별지 제11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1호의2서식(과정평가형 수첩형),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3호서식(카드형), ☐ 별지 제13호의2서식(상장형), ☐ 별지 제13호의3서식(과정평
 가형 상장형) ☐ **별지 제13호의4서식(모바일형)** ☐ **별지 제13호의5서식(과정평가형, 모바일형)**

별지 제21호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 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 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규정 : 공포일

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나. 제28조제1항, 제5항의 개정규정

다.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

라. 별표 6의 개정규정

마. 별표 11의 4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개정규정

사. 별지 제13호의 4, 별지 제13호의 5 서식의 개정규정

아.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정규정

자.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정규정

차. 별지 제21호 서식의 개정규정

2. 다음 각 목의 규정 : 2026년 1월 1일

가.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제목란의 개정규정

나. 제28조제6항의 신설규정

다. 제28조의 2 신설규정

라.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
 표 2의 개정규정 중 농기계정비기능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다.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공공조달관리사, 봉제기능사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바.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공공조달관리사, 농기계정비 종목과 관련된 개정규정

사.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공공조달관리사, 봉제기능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아.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별표 8의 농기계정비기능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자.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 중 화공란의 바이오공정기능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차.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관리란의 공공조달관리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카. 별표 10의 개정규정 중 의복란의 봉제기능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타.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의 종목 중 공공조달관리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파. 별표 17의 개정규정의 자격종목 중 공공조달관리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하.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기계장비설비·설치란의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와 관련된 개정규정

제2조(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고용노동부령 제42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1. 공공조달관리사, 봉제기능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철도 전기신호기능사, 식육가공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 2026년 1월 1일

2.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농업기계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에너지관리 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산림종묘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종자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과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중식조리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 : 2027년 1월 1일

제3조(공인어학성적 인정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4 중 국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응시 원서를 접수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의 국가기술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6 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자격취득자로서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전체에 대하여 능력단 위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적용한다.

제5조(추가 직무역량의 국가기술자격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본 개정령 안 공포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취득 자가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기재할 수 있다고 정한 추가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에 해당 직무역량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12월 31일

까지 포장산업기사,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포장산업기사, 석공예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 3(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3(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④ (생략) ⑤ (신설)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 서식 및 제13호의5 서식에 기재된 자격취득내역에

	<u>필요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진, 자격번호, 자격종목, 합격연월일, 발급연월일, 주무부처(청), 발급기관(수탁기관)명, 발급기관(수탁기관)장 직인, 과정평가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표출방식에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u> <u>⑥ 영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른다.</u> 제28조의2(추가 직무역량 표시 기준 및 절차) <u>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가 직무역량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u> 1. 추가 직무역량 표시의 필요성 2. 추가 직무역량과 기존 자격종목 간의 연관성 3. 훈련 과정 및 평가 방법의 신뢰성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 직무역량 표시를 요청받으면 해당 종목의 주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에 추가 직무역량 표시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u> <u>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 또는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을 확정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기술자격에 표시할 수 있는 추가 직무역량의 교육·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과정의 지정을</u>
--	--	--	--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 지정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협의를 거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